

EU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과 영향

금년 10월 들어 아일랜드와 폴란드가 유럽의 '미니헌법'인 리스본 조약의 비준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중 동 조약의 발효 가능성이 증대

리스본 조약은 유럽중앙은행을 EU 기관으로 격상,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의사결정방식 개편, EU 의회 및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한편, 조약이 발효될 경우 소규모 회원국의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국채 발행 비용 절감, EU의 정치·경제적 통합 가속화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확대 등이 기대됨

1. 최근 동향

- 현재 EU 27개 회원국중 26개국이 유럽의 '미니헌법'인 리스본 조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으며 체코만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 놓은 상태

* 리스본 조약의 성격은 <붙임 1> 참조

- 최근까지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등 3개국이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아일랜드는 10. 2일 2차 국민투표에서 찬성 67.1%로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폴란드도 10. 10일 대통령이 조약 비준안에 서명

리스본 조약의 국별 비준 현황¹⁾

	비준완료 ²⁾ 국가	비준절차	비준국가수 (누적)
2008. 2월	헝가리(6일), 몰타(6일), 프랑스(14일)	의회승인	3 (3)
3월	루마니아(11일)	"	1 (4)
4월	슬로베니아(24일), 불가리아(28일)	"	2 (6)
5월	오스트리아(13일), 덴마크(29일)	"	2 (8)
6월	라트비아(16일), 포르투갈(17일), 슬로바키아(24일)	"	3 (11)
7월	영국(16일), 룩셈부르크(21일)	"	2 (13)
8월	이탈리아(8일), 그리스(12일), 리투아니아(26일), 키프로스(26일)	"	4 (17)
9월	에스토니아(23일), 핀란드(30일)	"	2 (19)
10월	스페인(8일), 벨기에(15일)	"	2 (21)
12월	스웨덴(10일)	"	1 (22)
2009. 9월	네덜란드(11일), 독일(25일)	"	2 (24)
10월	폴란드(13일), 아일랜드(23일)	" (아일랜드는 국민투표)	2 (26)
11월 이후	체코(비준 예정) ³⁾	-	-

주 : 1) 2009. 10. 15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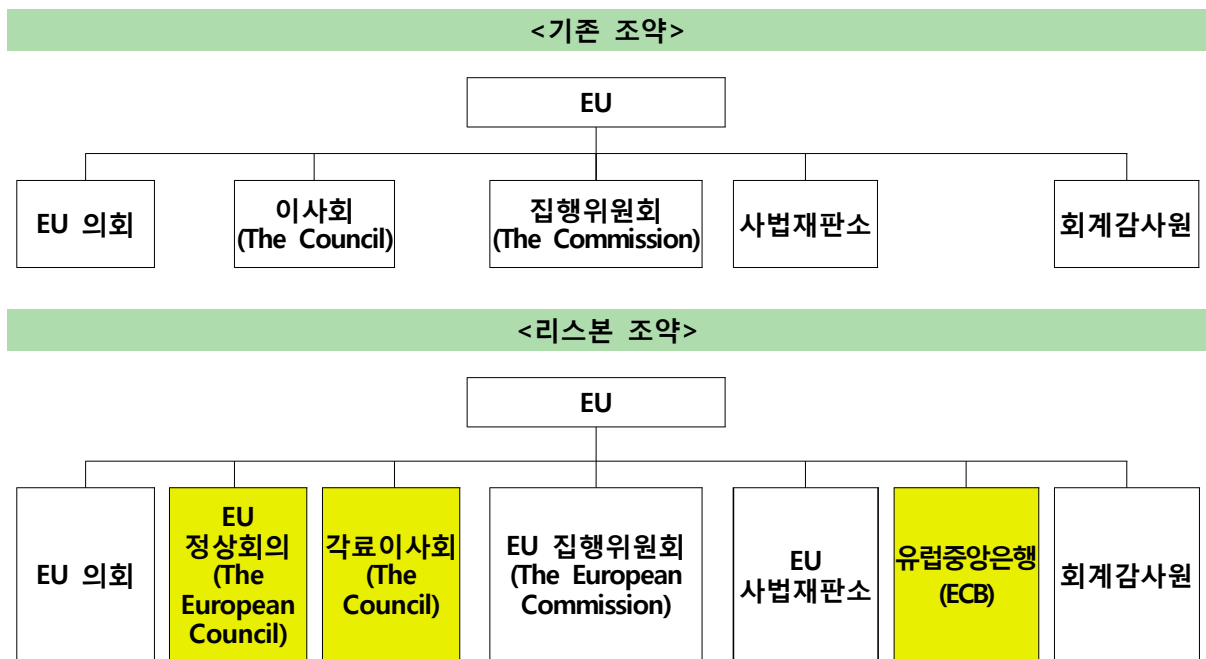
- 2) 비준증서 예치일 기준.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이탈리아 정부에 비준증서(instrument of ratification)를 예치(deposit)하도록 규정(Final Provision 제6조)
- 3) 상·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아직 비준안에 미서명

2. 주요 내용

(유럽중앙은행을 EU 기관으로 격상)

- 앞으로 전체 EU 회원국이 유로화를 사용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유로화 사용국(유로지역)만을 관할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범 EU 차원의 기관으로 격상시켜 비유로지역까지 권한을 확대
- ECB를 EU의 기관(The Union's institution)중 하나로 명시(조약 Article 1, 제9조 제1항)하고 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명문화(조약 Article 2, 제245A조 제1항)
 - 다만 비유로지역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로화를 사용할 때까지 통화정책 관련 권한(powers in monetary matters)의 행사를 유보(조약 Article 2, 제245A조 제4항)
- 이와 함께 EU 기관 및 회원국 정부에 대해 ECB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조약 Article 2, 제245A조 제3항)

EU 기관 구성 변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 EU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임의장(European Council President)직을 신설*(조약 Article 1, 제9B조 제5항, 제6항)

* 현재는 EU 회원국 정상이 6개월마다 교대로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의장직을 수행

○ 상임의장은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EU를 대표하고 EU 정상회의의 준비 및 주재, 회원국간 의견 조율, 회의 결과의 EU 의회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역할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로 논란중(<참고 1> 참조)

○ 임기는 2년 6개월(1회 연임 가능)이며 EU 정상회의에서 선출

<참고 1>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

□ 지금까지는 EU 집행위원장이 EU를 대표해 왔는데 앞으로 상임의장이 선출 되면 EU 집행위원장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

○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상임의장이 EU의 대통령은 아니며 단지 정상회의의 의장일 뿐이라고 주장

— 또한 폴란드 장관들은 자국 수상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상임의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

○ 반면 프랑스 등 일부국가는 상임의장이 미국,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대외관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 EU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일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직을 신설 (조약 Article 1, 제9E조)
 - 현재는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EU 집행위원회의 대외관계 집행 위원** 등 2명의 인사가 공동으로 대외정책을 담당
 - * High Representative for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 Commissioner for External Relations and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 동 대표는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을 겸임(조약 Article 1, 제9D조 제4항)하고 외무각료 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를 주재
 - 임기는 5년(조약 Article 1, 제9D조 제3항)이며 EU 집행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EU 정상회의에서 선출(조약 Article 1, 제9E조 제1항)

(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 의사결정방식 개편)

- EU 회원국간 투표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EU 정상회의 및 각료이 사회의 의사결정시 가중다수결방식*을 이중다수결방식**으로 변경하여 2014. 11월부터 시행*** (조약 Article 1, 제9C조 제4항)
 - * 투표권의 가치가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
 - ** EU 인구의 65% 및 회원국수의 55%(27개국중 15개국)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다만 회원국이 요구할 경우 2017. 3월까지의 기존 방식 적용 가능
- 이중다수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투표가치가 증대

의사결정방식 비교

인 구		회원국
가중다수결방식 ¹⁾ (당 초)	인구에 비례하여 투표권 배분	-
이중다수결방식 (개편안)	65% 이상	55%(15국/27국) 이상

주 : 1) 현 니스조약에서는 인구의 62%, 회원국수의 50%(14국/27국), 각료이사회 투표수의 74%(255/345)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

이중다수결방식 적용시 국별 투표권의 가치¹⁾ 변동

(%)

인구 순위 ²⁾	국 가	인구 비중	리스본 조약	니스 조약	변동	인구 순위 ²⁾	국 가	인구 비중	리스본 조약	니스 조약	변동
1	독 일	16.72	11.65	7.78	▲	15	오 스트 리 아	1.68	2.53	3.09	▼
2	프 랑 스	12.78	9.03	7.78	▲	16	불 가 리 아	1.56	2.47	3.09	▼
3	영 국	12.25	8.69	7.78	▲	17	덴 마 크	1.10	2.19	2.18	▲
4	이 탈 리 아	11.93	8.49	7.78	▲	18	슬 로 바 키 아	1.10	2.18	2.18	-
5	스 페 인	8.89	6.55	7.42	▼	19	핀 란 드	1.08	2.17	2.18	▼
6	폴 란 드	7.73	5.71	7.42	▼	20	아 일 랜 드	0.85	2.04	2.18	▼
7	루 마 니 아	4.38	4.15	4.26	▼	21	리 투 아 니 아	0.69	1.95	2.18	▼
8	네 델 란 드	3.31	3.50	3.97	▼	22	라 트 비 아	0.47	1.81	1.25	▲
9	그 리 스	2.25	2.88	3.68	▼	23	슬 로 베 니 아	0.41	1.78	1.25	▲
10	포 르 투 갈	2.15	2.80	3.68	▼	24	에 스토 니 아	0.26	1.70	1.25	▲
11	벨 기 에	2.13	2.80	3.68	▼	25	키 프 로 스	0.14	1.63	1.25	▲
12	체 코	2.09	2.77	3.68	▼	26	룩 섴 부 르 크	0.10	1.59	1.25	▲
13	헝 가 리	2.05	2.75	3.68	▼	27	몰 타	0.08	1.58	0.94	▲
14	스 웨 덴	1.83	2.63	3.09	▼	계		100.00	100.02	99.95	

주 : 1) 인구비중 및 회원국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수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이들 시나리오에 미치는 개별 국가의 영향력을 수치화한 것임(Banzhaf voting power index)

2) 2006년 기준

자료 : CEPS, Egmont

(EU에 법인격 부여 및 EC를 계승)

- EU에 법인격을 부여(조약 Article 1, 제46A조)함으로써 향후 EU가 모든 대외 관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경제 공동체인 EC(European Committee)를 계승토록 하여 한층 강화된 정치·경제 공동체로서 부상(조약 Article 1, 제1조 제2항(b))
 - 그동안 EU는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로서 국제회의 참석이나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시 당사자가 될 수 없었으며 대신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가 이 역할을 수행
- 이로써 EC, 공동외교안보, 내무사법 등 기존의 3주(three pillar) 체제가 EU로 통합

(EU 의회 및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 EU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수 조정을 통해 소규모 회원국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 현재는 EU 각료이사회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EU 의회의 입법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EU 의회가 EU 각료이사회와 함께 입법 및 예산 편성 절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권한도 확대*

* 특정 사안에 대해 EU 의회와 각료 이사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기관의 동수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의회의 입법절차상 권한이 확대됨(조약 Article 2, 제249A조)

— 또한 EU 의회의 국제협정체결에 대한 동의 권한도 확대

- 총 의원 수를 기존 736명에서 751명(의장 포함)으로, 회원국별 최소 의원수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최대 의원수는 기존 99명에서 96명으로 축소(조약 Article 1, 제9A조 제2항)

□ 한편 네덜란드 등의 요구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주권 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 의회의 권한을 강화(조약 Article 1, 제8C조, Protocol on the Role of National Parliaments in the European Union)

- EU의 입법 및 조약 개정에 앞서 회원국 의회에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 신청시 회원국 의회에 의무적으로 통보

* 각 회원국 의회는 법안 또는 조약안이 보조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 EU는 회원국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공동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EU의 공동정책은 조약상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의 위배 여부를 심의

(기 타)

- EU와 회원국의 권한을 EU의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 EU와 회원국간 공유 권한(shared competence), 개별 회원국 권한(supporting competence) 등으로 명확히 구분(조약 Article 2, 제2B조, 제2C조, 제2E조)

EU 및 회원국의 권한 구분

EU의 배타적 권한	EU와 회원국의 공유 권한	회원국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동맹 ■ 역내시장 운영에 필요한 경쟁규칙 확립 ■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 공동어업정책하의 해양생물자원 보전 ■ 공동통상정책* <p>* 기존의 무역 부문 이외에 외국인직접투자도 포함(조약 Article 2, 제188C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시장 ■ 사회정책 ■ 경제적·사회적·지역적 통합 ■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제외한 농어업정책 ■ 환경 ■ 소비자보호 ■ 운송 ■ 유럽 운송망 ■ 에너지 ■ 자유·안전·사법 지대 ■ 공중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호 및 증진 ■ 산업 ■ 문화 ■ 여행 ■ 교육, 직업교육, 청소년, 스포츠 ■ 시민권 보장 ■ 행정협조

- 또한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과도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게 경고하거나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조약 Article 2, 제99조, 제104조)
- 이밖에 유로지역의 정부 각료로 구성된 회의체(Euro Group)를 결성하고 회원국의 EU 탈퇴관련 절차 등을 명문화(조약 Article 1, 제49A조)

<참고 2>

리스본 조약과 현 EU 조약 비교

	리스본 조약	현 EU 조약 ²⁾
■ECB 지위	EU 기구	유로지역에 국한
■EU 정상회의 의장	상임의장(임기 2년 6개월)	6개월마다 국별 순회의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상임 대표(1인, 임기 5년)	- 공동외교안보 고위대표(1인, 임기 5년) - 대외관계 집행위원(1인, 임기 5년)
■EU 법인격	있음	없음
■EU 의회 권한	강화	미약
■EU 의회 의석	의석수 : 751석(의장 포함), 회원국당 최대 96명, 최소 6명	의석수 : 736석 회원국당 최대 99명, 최소 5명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미약
■EU 집행위원회 파견 위원	18명으로 축소 ¹⁾ , (국별 순번대로 파견)	회원국당 1명(현 27명)
■EU 집행위원장 선출	EU 정상회의에서 후보 추천, EU 의회에서 선출	EU 정상회의에서 지명, EU 의회가 승인, EU 각료이사회에서 임명
■EU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의사결정방식	이중다수결방식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가중다수결방식
■EU와 회원국 권한구분	명확화	불명확
■EU 탈퇴절차	명시	없음

주 : 1) 최근 아일랜드 국민투표 조건으로 회원국 수대로 유지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수정 가능
2) 니스 조약

3. 향후 전망 및 영향

가. 향후 전망

- 리스본 조약의 발효에 장애요인으로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유보적 태도와 영국 보수당의 집권시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폴란드·영국에 인정한 것과 같은 EU 인권장전의 적용 면제(opt-out)*, 아일랜드에 부여한 수준의 주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

* 2차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추방된 독일 및 헝가리계 나치 지지자들의 재산권 몰수를 규정한 Benes 법(Decrees)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인정하는 EU 인권장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경우 나치 지지자들이 재산권 환수를 위한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내년 6월 총선에서 집권이 확실시되는 영국 보수당은 정권교체시 리스본 조약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전문가들은 체코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체코 대통령도 리스본 조약의 시행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어 빠르면 금년내에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

나. 리스본 조약의 영향

(개별 회원국 차원)

□ 아일랜드 등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신용등급(전망) 개선으로 국채 발행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이번 비준안 통과로 약 2억유로의 국채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

□ 다만 EU의 정치·경제적 통합정도가 현재보다 강화되면서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상의 자율성은 더욱 제약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안정성장협약(SGP)상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제재절차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회원국의 자율적인 재정집행이 제약받을 가능성

* EU 집행위원회는 EU 재무각료이사회 보고전에 과도한 재정적자국에 대해 경고 또는 의견 표명이 가능

○ 한편 '사회정책'이 EU와 회원국간의 공유권한(shared competence)으로 분류됨에 따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도 부분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

(범 EU 차원)

- EU에 대한 법인격 부여와 EC 승계를 계기로 대외협상 당사자가 명확해짐으로써 향후 원활한 통상정책이 기대
 - 또한 현재 무역분야에 국한된 EU의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이 외국인투자 분야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EU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중다수결방식 도입 등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원활해지고 EU 및 회원국 의회의 권한 증대를 통해 회원국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주권 침해의 소지도 최소화
 - 궁극적으로는 EU의 정치·경제적 통합 가속화에 따른 정책공조 등을 통해 향후 EU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출구전략 등에서 정책공조가 예상되고 유로화 도입의 가속화로 유로화의 위상이 강화되는 한편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이 활성화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ECB의 독립성 침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선출시 일부 국가로의 편중 등 문제점도 상존
 - EU 기관간 협조의무* 부과, EU 의회와 재무각료이사회의 ECB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ECB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
- * EU 기관들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함(조약 Article 1, 제9조 제2항)
- ** 재무각료이사회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관련 임무를 부과(조약 Article 2, 제105조)할 수 있으며,
EU 의회와 재무각료이사회는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조약 Article 2, 제111A조)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선출*시 현재의 순회의장체제와는 달리 소규모 국가에서 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아 독일, 영국 등 경제대국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

* 초대 상임의장으로는 Tony Blair 전 영국 수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글로벌 차원)

- EU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경우 인구 및 경제 규모면에서 미국, 중국 등과 대등하거나 능가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
- 다만 EU는 회원국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연합체로서 개별 회원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어 미·합중국과 같은 단일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

EU·미국·중국의 경제력 비교

	(2008년 기준)		
	EU 27개국	미 국	중 국
실질GDP ¹⁾ (십억달러)	15,301	13,312	1,631
인구(백만명)	496	304	1,328

주 : 1) 연평균 환율로 환산
 자료 : IMF

<붙임 1>

리스본 조약의 성격 및 유럽 조약 연혁

□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은 2007. 12. 13일 EU 27개 회원국이 EU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조약**을 수정한 것으로서 정치적 통합을 강화한 것이 특징

* 정식명칭은 EU 조약 및 EC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동 조약에 의해 EC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명칭이 변경

** EU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1992, 마스트리히트 조약), EC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1957, 로마 조약)

○ 현재는 EU 조약 및 EC 설립조약을 일부 개정한 니스조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

유럽 조약 및 공동체 설립 연혁

서명일	발효일	서명장소	조약명	공동체
1951. 4. 18	1952. 7. 23	파리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조약	ECSC 설립
1957. 3. 25	1958. 1. 1	로마	EEC(유럽경제공동체) 및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	EEC 설립 EURATOM 설립
1965. 4. 8	1967. 7. 1	브뤼셀	Merger Treaty	EC(유럽공동체)로 통합
1986. 2. 17 1986. 2. 28	1987. 7. 1	룩셈부르크 헤이그	SEA(Single European Act)	
1992. 2. 7	1993. 11. 1	마스트리히트	EU 조약	EU 출범
1997. 10. 2	1999. 5. 1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조약	
2001. 2. 26	2003. 2. 1	니스	니스 조약	
2007. 12. 13	미정	리스본	리스본 조약	EU로 통합

<붙임 2>

리스본 조약의 추진 경위

- EU 회원국은 당초 헌법조약을 발의(2004. 10. 29)하였으나 프랑스(2005. 5. 29)와 네덜란드(2005. 6. 1)가 국민투표에서 이를 부결시킴
 -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 및 경기부진, 자국의 주권 및 정체성 상실 우려, Chirac 정부에 대한 반감 등이 부결 요인
 - 네덜란드의 경우는 터키의 EU 가입추진에 따른 회교이민 유입 우려, EU 내 입지 축소 및 정체성 상실 우려 등이 부결 요인
- 이에 따라 2005. 6. 16일 EC는 헌법조약에 대한 숙려기간을 요청하였으며 2007년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Merkel 총리가 헌법조약 대신 수정조약의 형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
- Merkel 독일 총리와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조약안 수정 작업을 추진하여 2007. 10. 5일 정부간회의(IGC)에서 수정 조약안을 마련하고 동년 12. 13일 최종적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서명
 - 리스본조약은 헌법조약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EU 상징 등 헌법적 성격이 있는 규정들을 삭제

리스본 조약과 헌법조약 비교

	리스본 조약	헌법조약
■ 비준 절차	의회비준(아일랜드는 국민투표)	국민투표
■ EU 상징	삭제	포함
■ EU 조약의 우선 적용	배제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우선 적용
■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칭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칭 : 외무장관
■ 이중다수결방식	적용시기 : 2014. 11월 * 2017. 3월까지 회원국의 요청시 현 이중다수결방식 적용 가능 ¹⁾	조약 발효시부터 적용
■ EU 의회 의석수	750석 + 1석 ²⁾	750석
■ EU 인권장전 ³⁾	전문이 본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법적구속력을 인정 (조약 Article 1, 제6조)	전문을 본문에 포함하여 상위법으로 인정

주 : 1) 폴란드 정부의 반대로 연기

2) 이탈리아가 영국과 동일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하여 반영

3)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스트라스부르크, 2000. 12. 7.)

리스본 조약 추진 경과

	일 자	추진 경과
EU 헌법 조약 추진	2003. 6. 20	유럽 헌법조약 초안 제출
	10. 4	정부간회의(IGC :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출범
	12. 13	IGC,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스페인의 의사결정방식 반대로 결렬
	2004. 6. 18	아일랜드, EU 대통령 정치적 합의 도출
	10. 29	EU 정상, 로마에서 헌법조약안에 서명
	2005. 2. 20	스페인, 국민투표 찬성
추진	5. 29	프랑스, 국민투표 부결
	6. 1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
	6. 16	EC, 숙려기간 요청
리스본 조약 추진	2007. 6. 21	EC, IGC에 수정 조약(Reform Treaty) 관련 권한 위임
	10. 5	수정 조약 초안 제출
	12. 13	EU 정상, 리스본에서 조약 서명
	2008. 6. 12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2009. 10. 2	아일랜드, 국민투표 통과
	10. 10	폴란드 비준서명

<붙임 3>

유로지역 및 EU 가입국가 확대 현황

가입연도	유로지역 가입국가 ¹⁾	EU 가입국가 ¹⁾²⁾
1993	-	(1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1995	-	(15)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1999	(1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
2001	(12) 그리스	-
2004	-	(25)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키프로스, 몰타
2007	(13) 슬로베니아	(27)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8	(15) 키프로스, 몰타	-
2009	(16) 슬로바키아	-

주 : 1) ()내는 회원국 수

2) 1958년 EEC 6개국, 1973년 EC 9개국, 1981년 EC 10개국, 1986년 EC 12개국

<붙임 4>

리스본 조약* 주요 조항

* 조약 Article 1조(EU 조약 개정) 항목

(ECB를 EU 기구로 격상)

제9조 제1항 : The Union's institutions shall be ;
— the European Central Ban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제9B조 제5항 : The European Council shall elect its President, by a qualified majority, for a term of two and a half years, renewable once. In the event of an impediment or serious misconduct, the European Council can end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same procedure.

제6항 :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 (a) shall chair it and drive forward its work;
- (b) shall ensure the preparation and continuity of the work of the European Council in cooper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and on the basis of the work of the General Affairs Council;
- (c) shall endeavour to facilitate cohesion and consensus within the European Council;
- (d) shall presen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fter each of the meetings of the European Council.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shall, at his level and in that capacity, ensure the external representation of the Union on issues concerning it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ithout prejudice to the powers of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shall not hold a national office.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제9E조 제1항 : The European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with the agreement of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shall appoint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The European Council may end his term of office by the same procedure.

(EU 법인격 부여 및 EC 대체·계승)

제46A조 : The Union shall have legal personality

제1조 제2항 (b) : The Union shall replace and succeed the European Community.

(EU 의회 구성 및 권한 강화)

제9A조 제2항 : 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on's citizens. They shall not exceed seven hundred and fifty in number, plus the President. Representative of citizens shall be degressively proportional, with a minimum threshold of six members per Member State. No Member State shall be allocated more than ninety-six seats.

(의사결정방식 개편)

제9C조 제4항 : As from 1 November 2014,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as at least 55%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comprising at least fifteen of them and representing Member States comprising at least 65% of the population of the Union.

A blocking minority must include at least four Council members, failing which the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emed attained.